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1089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피고1.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부 D

2. D

3.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 담당변호사 정지은

변론 종결2020. 5. 28.

판결 선고2020. 7.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3,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D은 공동하여 140,70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B,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5,35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B은 G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부친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30. 04: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64 올림픽공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위 사거리에 이르러 오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피고 차량의 옆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H이 26일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8. 24.경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10.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 48,821,490원, 합의금 3억 원을 합한 348,821,490원을 H 측에게 지급하였고, 법률자문비용 44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결정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H 측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4,646,44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던 H의 진료비 1,244,700원을 구상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1,24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신호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고 B이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을 정지할 충분한 시간 및 공간이 있었음에도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D에게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하여 공동면책시킨 보험금 350,506,190원(= H 치료비 등 350,066,190원 + 법률자문비용 44만 원)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45,354,333원(= 350,506,190원 × 70%)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104,646,440원을 공제한 140,707,893원을 구상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게는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73,353,560원(= 180,000,000원 - 104,646,440원)을 피고 B, D과 공동하여 구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70:30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자문비용은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 D이 피고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직후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을 하던 피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에 미리 좌회전을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교차로 신호는 양방향 직진→황색(5초)→적색(2초)→양방향 좌회전 신호의 순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신호로 변경된 지 약 6.2초 후에 일어났다. 따라서 만약 원고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소요되는 7초 후에 차량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였더라면 당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까지 넘어간 지점에서 좌회전 대기를 하던 중 황색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③ 원고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출발하였을 당시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오는 피고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가 구하는 법률자문비용은 보험자인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제67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50,066,190원(=기지급 치료비 및 합의금 348,821,490원 + 추가 지급 치료비 1,244,700원)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5,019,857원(= 350,066,190원 × 30%)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104,646,440원을 공제한 373,4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8423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D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행에 있어 피고 D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양지